

회의비 및 식대 집행기준	심의구분 : 개정
	제안부서 :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

제안사유
 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연구수당 사용기준에 따라 변경

현 행	개 정(안)	개정요점																					
<p>회의비 및 식대 집행 내규</p> <p>제2조(정의) ① “회의비”라 함은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진과 외부인사의 회의 시 집행한 경비를 말한다. ② “식대”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진의 야근 및 특근 식대를 말한다. ③ “외부인사”라 함은 연구참여진 외의 교외인사를 말한다.</p> <p>제4조(집행기준) ① 회의비 및 식대의 1인당 상한액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연구책임자</th> <th>참여연구원</th> <th>외부인사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회의비</td> <td>30,000원</td> <td>30,000원</td> <td>30,000원</td> </tr> <tr> <td>식대</td> <td>15,000원</td> <td>10,000원</td> <td>집행불가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제5조(기타사항)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/p>	구분	연구책임자	참여연구원	외부인사	회의비	30,000원	30,000원	30,000원	식대	15,000원	10,000원	집행불가	<p>회의비 및 식대 집행기준</p> <p>제2조(정의) ① “회의비”라 함은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연구자와 외부인사의 회의 시 집행한 경비를 말한다. ② “식대”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의 야근 및 특근 식대를 말한다. ③ “외부인사”라 함은 참여연구자 외의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.</p> <p>제4조(집행기준) ① 회의비 및 식대의 1인당 상한액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참여연구자</th> <th>외부인사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회의비</td> <td>30,000원</td> <td>30,000원</td> </tr> <tr> <td>식대</td> <td>15,000원</td> <td>집행불가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제5조(기타사항)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한다.</p>	구분	참여연구자	외부인사	회의비	30,000원	30,000원	식대	15,000원	집행불가	<p>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</p> <p>회의비 및 식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의 상한액 동일</p> <p>관련규정 변경</p>
구분	연구책임자	참여연구원	외부인사																				
회의비	30,000원	30,000원	30,000원																				
식대	15,000원	10,000원	집행불가																				
구분	참여연구자	외부인사																					
회의비	30,000원	30,000원																					
식대	15,000원	집행불가																					

현행	개정(안)	개정요점
부칙(2020. 2. 21) 본 제정 내규는 2020.3.1.부터 시행한다.	부칙(2020. 2. 21) 본 제정 내규는 2020.3.1.부터 시행한다. 부칙(2022. 1. 1) 본 개정 내규는 2022.1.1.부터 시행한다.	